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지안-만포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아래부터는 쌍방이라고 한다.)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원들의 래왕과 경제무역활동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지안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강도 만포시사이 에 국경다리를 건설하고 관리 및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에서 아래의 정의들을 사용한다.

1. 《국경다리》란 기본다리와 인입다리, 해당한 부속시설들을 포함한 만포-지안 국경다리를 의미한다.
2. 《기본다리》란 압록강물길을 횡단한 다리부분을 의미한다.
3. 《인입다리》란 기본다리와 로반을 련결하는 다리부분을 의미한다.
4. 《봉쇄건설구역》이란 압록강수역을 포함하여 쌍방 경내의 국경다리의 기본다리구역과 그 부근의 격리된 구역을 의미한다.

제 2 조

쌍방의 협정리행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부문은 조선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며 중국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이다.

쌍방의 국경다리건설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주관기관은 조선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도로국이며 중국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국제합작국이다.

제 4 조

쌍방의 국경다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집행기관은 조선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도로건설관리국 자강도 도로건설려단이며 중국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교통청이다.

제 5 조

국경다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강도 만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지안시사이에 위치하며 구체적인 지점은 쌍방 해당부문들이 현지조사와 론증을 진행한후 확정한다.

제 6 조

국경다리의 기본다리와 조선측 인입다리는 조선측이 책임지고 건설하며 중국측 인입다리는 중국측이 책임지고 건설한다.

제 7 조

국경다리의 기본다리와 조선측 인입다리는 조선측이 설계하며 중국측 인입다리는 중국측이 설계한다.

설계방안은 쌍방 주관부문들이 공동으로 심사확정한다.

국경다리의 기본다리와 조선측 인입다리는 조선측의 건설기준과 기술규범에 따르며 중국측 인입다리는 중국측의 건설기준과 기술규범에 따른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쌍방 해당부문들이 현지조사와 설계작업과정에

협상하여 해결한다.

쌍방은 인입도로와 보조시설, 국경통과지점의 검사검역시설을 각기 책임지고 설계하고 건설하며 다리건설과 동시에 진행한다.

제 8 조

국경다리건설은 국경하천인 압록강 강바닥의 위치와 강안, 국경선의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국경지역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 9 조

쌍방은 필요한 구역을 자기경내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설정한다.

쌍방은 《만포-지안국경다리 봉쇄건설구역설정 및 관리방안》을 토의하여 제정한다. 이 방안은 이 협정의 부록 1로 첨부한다.

쌍방 해당부문들은 각기 자기 국내법에 따라 자기측 봉쇄건설구역과 인원,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의 출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일방은 자기 경내의 봉쇄건설구역에서 상대방 다리건설인원들의 안전과 건설완공과 관련한 재산과 문건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리건설인원들은 주재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쌍방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의 봉쇄건설구역출입의 편리를 제공하며 각기 국내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속을 간소화한다.

쌍방은 《만포-지안국경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의 국경통과수속간소화에 관한 규칙》을 토의하여 제정한다.

이 규칙은 이 협정의 부록 2로 첨부한다.

제 11 조

다리건설인원들은 국경다리의 기본다리과 인입다리건설기간 필요한 통신수단을 사용할수 있다.

쌍방의 해당부문들은 통신수단을 사용하기전에 그 류형과 수량, 형 및 번호, 주파수, 호출부호를 토의확정한다.

제 12 조

쌍방은 국경다리를 건설한후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며 관리와 보호의 책임계선은 기본다리의 중간선이다.

제 13 조

쌍방의 해당 부문들은 국경다리건설과 관리 및 보호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 14 조

쌍방의 해당부문들은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이 협정에 근거하여 국경다리의 건설과 관리,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필요한 문건을 제정한다.

제 15 조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의정서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 협정을 수정하거나 보충할수 있다.

제 16 조

이 협정은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협정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 협정의 폐기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의 제7, 9, 10, 11조는 국경다리건설이 완공되어 자동차가 통행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협정은 2012년 5월 10일 평양에서 체결되었으며 중국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부록 1

만포-지안국경다리 봉쇄건설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제1조 봉쇄건설구역의 설정

1. 쌍방은 만포-지안국경다리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공동수역 포함)을 봉쇄건설구역으로 설정한다.

봉쇄건설구역은 룡지봉쇄건설구역과 다리위치 아래우의 일정한 범위내의 수역봉쇄건설구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2. 다리건설지휘부와 중국지방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봉쇄건설구역의 설정범위와 형식을 확정한다.

3. 봉쇄건설구역주변에는 해당한 차단식별표식을 세워야 한다.

4. 쌍방은 각기 자기측의 봉쇄건설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표식물을 설치하며 구역내의 지상구조물과 지하관과 시설들의 철거를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2조 봉쇄건설구역의 출입

1. 쌍방의 해당부문들은 이 협정 부록 2의 해당한 규정에 따라 자기측으로부터 봉쇄건설구역에로의 출입과 만포-지안 쌍방려객화물철도수송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방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하는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의 수속을 간소화한다.

2. 쌍방 해당부문들은 각기 자기 봉쇄건설구역안에 공동검사검역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며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은 봉쇄건설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다.

3. 다리건설과 관계없는 선박들은 봉쇄건설구역내의 수역에 정박할수없다.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들을 실은 선박들은 이 협정의 부록 2의 제2조에 지적된 로정을 통하여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한다.

4. 일방으로부터 봉쇄건설구역에 들어온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은 봉쇄건설구역밖의 상대방 구역으로 들어갈수 없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각기 국내 법규정에 따라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봉쇄건설구역에서의 건설과 생활 및 설비, 물자들의 관리

1. 봉쇄건설구역에서의 건설과 생활은 다리건설지휘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한다.

2. 다리건설기간 봉쇄건설구역에서의 다리건설작업은 24시간동안 진행할수 있다.

3. 중국측 봉쇄건설구역에서의 건설 및 생활용수, 전기, 통신망 등의 문제는 다리건설지휘부와 중국지방정부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4. 봉쇄건설구역에서의 인원들의 생활과 해당한 과외활동은 다리건설지휘부의 해당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5. 다리건설과정에 조선측의 남은 설비, 물자, 운수수단은 반드시 조선으로 넘겨간다.

제4조 기타 사항

1. 쌍방은 다리건설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봉쇄건설구역안의 다리건설인원들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 등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무기와 탄약 등 금지품을 휴대한 인원들이 봉쇄건설구역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봉쇄건설구역에서 조선측 인원들의 내부치안 및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선측 주관부문이, 중국측 인원들의 내부치안 및 형사사건

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측 주관부문이 처리하며 조중쌍방 인원들사이에 사건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주관부문이 공동으로 조사처리한다.

3. 봉쇄건설구역의 해체와 관련한 문제는 쌍방이 따로 토의한다.

4. 쌍방은 다리건설기간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토의해결하기 위하여 봉쇄건설구역안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다.

5. 쌍방은 자기측 봉쇄건설구역밖의 안전보위사업을 각기 책임지고 진행한다.

6. 쌍방이 규정하지 못한 기타 사항들은 협상하여 해결한다.

부록 2

만포-지안 국경다리 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의 국경통과수속간소화에 관한 규칙

제 1 조

이 규칙에 지적된 수속간소화는 다리건설기간(조사와 설계, 시공 인원들의 현장진입전 준비단계포함) 쌍방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건설자재, 식료품, 의약품 등 생산, 생활물자포함), 운수수단들의 봉쇄 건설구역과 만포-지안 쌍방려객화물철도수송국경통과지점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 사업에 적용한다.

제 2 조

쌍방의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은 원칙적으로 각기 자기측으로부터 임시부두나 편리한 도로, 부교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자유롭게 출입한다.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은 만포-지안 쌍방려객화물철도수송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방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할수 있다.

쌍방의 해당부문들은 이를 위하여 각기 국내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속을 간소화하며 필요한 편리를 제공한다.

제 3 조

다리건설인원들은 쌍방 해당부문들이 토의확정한 효력있는 국경통행증을 소지하고 자기측으로부터 봉쇄건설구역과 만포-지안 쌍방려객화물철도수송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방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한다.

쌍방은 상대측 봉쇄건설구역을 출입하는 다리건설인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상대방 해당부문에 제출한다.

다리건설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이 만포-지안 쌍방려객화물철도수송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상대방의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할때 일방은 사전에 명세서를 상대방에 제출하며 검사후 출입한다.

제 4 조

다리건설지휘부와 중국지방정부가 주관하여 다리건설시작전 또는 필요한 시기 국경경비와 통행검사(변방검사), 세관, 해사 등 부문사이의 회담을 진행하고 봉쇄건설구역출입과 관련한 해당한 문제를 토의한다.

다리건설기간 다리건설인원과 설비, 물자, 운수수단들이 봉쇄건설구역으로 립시로 출입할 필요가 있을때 일방은 24시간전에 상대방의 통행검사(변방검사)와 세관부문에 통지한다.

긴급히 봉쇄건설구역으로 출입할때에 일방은 30분전에 상대방의 통행검사(변방검사)와 세관부문에 통지한다.

제 5 조

다리건설과정에 조선측은 다리건설목적으로 군용직승기를 리용할 수 있으나 2009년 10월 4일에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의 해당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중국측에 통보하여야 한다.